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 관련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7013(2020.10.13.)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0.4.)
-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2.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방대본공문)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2.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주무관 김신혜 보건사무관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전결 2020.10.19.

협조자

시행 학생건강정책과-9077 (2020. 10. 19.)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어진동) / www.moe.go.kr

전화번호 044-203-6814 팩스번호 044-203-6438 / shin8352@korea.kr / 비공개(5)